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7월 2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인사혁신처 장관
진영 (인사혁신처 소관)

●대통령령 제30878호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후단 중 “한다”를 “하며, 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한 사건이 속한 회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과반수가 당초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중앙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제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제9조제1항 본문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기간을 연장”을 “기한을 연기”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를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징계등 요구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제12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1.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른 징계등 사건의 관할 이송에 관한 사항
- 2.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징계의결등의 기한 연기에 관한 사항

⑦ 제6항에 따른 서면 의결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과 징계등 혐의자, 징계의결등 요구자, 증인, 피해자 등 법 및 이 영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 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출석자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의결하는 경우 징계등 혐의자 및 피해자 등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17조 중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징계등 요구의 내용”을 “협의 당시 직급, 징계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로, “참작하여야”를 “참작해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1. 녹음기, 카메라, 휴대전화 등 녹음·녹화·촬영이 가능한 기기
2. 흉기 등 위험한 물건
3. 그 밖에 징계등 사건의 심의와 관계없는 물건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녹음, 녹화, 촬영 또는 중계방송
2.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3.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제23조제2항 중 “법 제78조의3제2항”을 “법 제78조의3제2항 및 제78조의4제2항”으로, “의결하여야”를 “의결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사실조사, 제척 및 기피”를 “사실조사, 원격영상회의, 위원의 제척 및 기피,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으로, “제11조, 제12조제4항·제5항 및 제15조를 각각”을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2조제4항·제5항, 제12조의2, 제15조 및 제22조를”으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이 법 제7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법 제78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확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퇴직 제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항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심사 사건이 속한 회의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심사 청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폭력범죄 등 사건이 속한 회의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조제6항 및 제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성비 구성이 제5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회의 구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한 보통징계위원회에 관하여는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4조(징계의결등 요구자 등의 징계위원회 출석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5조(징계위원회의 징계등 사건 의결 시 참작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1호의2서식]

확인서

| | | | | | | |
|--|--|-------|-----------------|------------------|---|---|
| 1. 인적사항 | 소속 | | 직위(직급) | | 성명 | |
| | (현재) (협의 당시) | | (현재) (협의 당시) | | | |
| 2. 비위 유형 | 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비위 | | | | | (<input type="checkbox"/> 해당함,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
| | 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 | | | | | (<input type="checkbox"/> 해당함,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
| |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 | | | | (<input type="checkbox"/> 해당함,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
| | 성폭력 범죄 | | | | | (<input type="checkbox"/> 해당함,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
| | 성매매 | | | | | (<input type="checkbox"/> 해당함,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
| | 성희롱 | | | | | (<input type="checkbox"/> 해당함,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
| |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포함) | | | | | (<input type="checkbox"/> 해당함,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
| |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 | | | | (<input type="checkbox"/> 해당함,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
| |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 제외) | | | | | (<input type="checkbox"/> 해당함,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
| | 소극행정 | | | | | (<input type="checkbox"/> 해당함,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
| |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 | | | | (<input type="checkbox"/> 해당함,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
| |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input type="checkbox"/> 해당함,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
| | 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나 채용 업무와 관련한 비위행위 | | | | | (<input type="checkbox"/> 해당함,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
| 부정청탁 | | | | | (<input type="checkbox"/> 해당함,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 |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 | | | | (<input type="checkbox"/> 해당함,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 |
| 3. 징계부가금 | 대상 여부(<input type="checkbox"/> 해당함,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대상금액(원, 배) | | | | | |
| | 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 상황 등 | | | | | |
| 4. 감경 대상 공적 유무 및 감경 대상 비위 해당 여부 | 공적 사항 | | | 징계 사항[불문(경고) 포함] | | |
| | 포상일 | 포상 종류 | 시행청 | 날짜 | 종류 | 발령청 |
| |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함,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 | | | | |
|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 (<input type="checkbox"/> 해당함,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 | | | | | |
| 5. 혐의자의 평소 행실 | 주의·경고 횟수, 직무수행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 | | | |
| 6. 그 밖의 사항 | 규제개혁이나 국정과제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비위 해당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함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 | | | | |
| | ※ 불합리한 법령정비 또는 규제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나 규제민원의 신속한 처리 등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말합니다. 다만, 고의·중과실이거나 금품비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 | | | |
| | 그 밖의 정상 참작 사유 기재 | | | | | |

위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책임자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권자(직위)

직인

◇개정이유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6905호, 2020. 1. 29. 공포, 7. 30. 시행)됨에 따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징계위원회의 회의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징계위원회가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징계 등에 관한 심의·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 비위 사건 관련 징계위원회의 회의 구성 개선(제4조제6항 및 제5조제6항 신설)

징계 사유가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징계위원회의 회의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함.

나. 원격영상회의 근거 마련(제12조의2 신설)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혐의자 및 피해자 등의 신상정보와 회의 내용·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다. 징계 등의 정도 결정 시 참작사항 정비(제17조)

징계위원회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을 의결할 경우 참작해야 하는 사항에서 근무성적을 제외하고 혐의 당시 직급 및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함.

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절차 마련(제23조의2 신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이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도록 하고, 확인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확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7월 2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장관

유은혜

●대통령령 제30879호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일반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제7조제1항 본문 중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출석하거나”를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요구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제1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1.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른 징계등 사건의 관할 이송에 관한 사항
- 2.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징계등 의결의 기한 연기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과 징계등 혐의자, 징계등 의결 요구자, 증인, 피해자 등 법 및 이 영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출석자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